가압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는 가압류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목적물별 신청·집행 방법, 채무자의 불복 및 집행취소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압류 1
1. 가압류 알아보기 4
1.1. “가압류”란? 4
1.1.1. 가압류의 개념 4
2. 가압류의 신청 6
2.1. 가압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6
2.1.1. 가압류 신청 요건 6
2.1.2. 가압류 신청 당사자 7
2.2. 가압류 신청 절차 8
2.2.1. 가압류의 관할 9
2.2.2.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10
2.2.3. 신청비용 납부 12
2.3. 목적물별 가압류 신청 15
2.3.1. 부동산 15
2.3.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16
2.3.3. 유체동산 17
2.3.4. 금전채권 18
2.3.5. 그 밖의 재산권 20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22
3.1.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22
3.1.1. 형식적·실질적 심사 22
3.2.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23
3.2.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3
3.2.2.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24
3.2.3.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26
4.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28
4.1. 집행절차 28
4.1.1. 가압류의 집행 28
4.2. 집행취소 및 공탁금 회수 30
4.2.1. 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30
4.2.2.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31
5.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33
5.1. 이의신청 33
5.1.1.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33
5.2. 취소신청 34
5.2.1.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34
5.2.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36

1. 가압류 알아보기

1.1. “가압류”란?

1.1.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의 개념 및 구분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가압류의 주요 유형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51조, 제276조제1항, 제293조, 제29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참조).

가압류 목적물의 종류	내용
부동산 가압류	• 토지·건물 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전제품·가구 등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금전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 앞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참조).

※ 가처분의 요건·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실현하려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참조).

▪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가압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및 제277조).

가압류의 절차

▪ 가압류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27조제3항, 제276조부터 제283조까지, 제287조, 제288조, 제291조부터 제293조까지, 제296조 및 제31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제203조의4, 제204조 및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제3조 참조).

① 신청 준비
: 신청 요건·당사자 확인,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

② 가압류 신청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③ 법원의 심리
: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및 신청이유에 대한 실질적 심사

▼

④ 담보제공(필요한 경우)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 또는 선담보제공

▼

⑤ 가압류 명령
: 결정서 송달 및 가압류해방금액 기재

▼

⑥ 가압류 집행
: 목적물별 집행(등기·등록 촉탁, 집행관 집행, 제3채무자 송달 등)

▼

⑦ 채무자의 불복(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2. 가압류의 신청

2.1. 가압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2.1.1.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의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며,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 참조].

▹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참조).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참조).

▪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참조).

> ※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가사소송절차에 따라 보호받는 금전적 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참조).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79조제2항 참조).

> ※ 담보가 있는 경우의 보전의 필요성

Q.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청구채권을 만족시킬 만한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참조).

2.1.2. 가압류 신청 당사자

가압류 신청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라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는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와 그 상대방인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고, 가압류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를 신청한 사람을 “신청인”,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5조, 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 참조).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가압류 소송에서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자로,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채무자로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제280조 및 제292조 참조).

▪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령용어해설

-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소송능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스스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소송에서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Q.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그 가압류는 유효한가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참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참조).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 후 사망하였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참조).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소송 참가

▪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 공동소송참가: 소송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제1항).

소송 승계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 그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 가압류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가압류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증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2.2. 가압류 신청 절차

2.2.1. 가압류의 관할

가압류 사건의 관할

전속관할

▪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

> ※ “전속관할”이란?
>
>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31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이송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본안의 관할법원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 ※ “본안(本案)”이란?
>
> 보전처분에 따라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가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본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참조).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목적물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그 밖의 관할에 대한 규정

시·군법원의 관할

▪ 소액사건,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참조).

▪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4호).

▪ 시·군법원에서 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호).

>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재판장의 권한

▪ 가압류의 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참조).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참조).

2.2.2.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신청서 기재사항

▪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규칙」 제2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참조].

기재사항	내용
당사자	•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청구채권 및 목적물의 표시 등	•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등을 기재 •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
신청취지	•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피보전권리(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법원	• 가압류를 신청하는 관할법원을 표시
소명방법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방법을 기재
첨부서류	•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
제출자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작성날짜	• 신청서 작성일을 기재

※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목적물별로 특별히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목적물별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진술서 작성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진술합니다(전산양식 A4705 참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산양식 A4705 참조).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목적물별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법률서식 작성 바로가기>를 통해 작성례에 따라 직접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을 통한 가압류 신청 및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2.3. 신청비용 납부

인지 첨부

인지액

▪ 가압류 신청서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서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제5항제4호, 제11조제1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참조).

구분	인지액
가압류 신청서	10,00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0,000원
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10,000원
제소명령 신청서,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등	1,000원
가압류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수입인지 납부

▪ 가압류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전자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예납과 납부

송달료 예납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납부기준에 따라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구분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가압류 신청 포함)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 (집행취소는 제외)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8회분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제소명령, 담보취소 등)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2회분
즉시항고 사건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5회분

※ 2026. 7. 1.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대국민 서비스-소식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참조].

송달료 납부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와 송달료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참조).

▹ 송달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의2제1항).

▪ 송달료 납부 후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 추가 납부

▪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에 사건번호를 적고

현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참조).

>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 부동산,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4항).

지방교육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 목적물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 가압류 집행 시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 목적물별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라목·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4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참조).

가압류 목적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채권금액의 2/1,000	등록면허세액의 20/100	부동산 1개당 4,000원
자동차	1건당 15,000원	-	-
건설기계	1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소형선박	1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유체동산	-	-	-
금전채권	-	-	-

※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마목).

※ 금전채권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부채권·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부기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참조).

2.3. 목적물별 가압류 신청

2.3.1. 부동산

부동산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및 특정

▪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하며,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 표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참조).

부동산 유형별 가압류 방법

부동산의 합유 지분

▪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1조, 제714조 및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1조 참조).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신탁재산의 가압류 제한

▪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됩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선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및 특정

▪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등 해당 등록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참조).

유형별 가압류 방법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187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등록된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자동차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제1항 및 제211조).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등은 해당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참조).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선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유체동산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유체동산의 범위 및 특정 방식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므로, 가압류할 물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제2항, 제291조 및 제296조제1항 참조).

※ "유체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유체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유체동산 가압류의 절차상 제한

선담보제공의 제한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4. 금전채권

피압류채권의 특정

피압류채권의 특정 방법 및 범위

▪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및 제291조).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제1항제3호 및 제218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참조).

가압류 제한 대상 채권

압류금지채권 및 범위

▪ 다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246조의2 및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1호)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2호)
병사의 급료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3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250만원까지는 전액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1/2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2분의 1 •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또는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 그 밖의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전액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다만,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 또는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금액

▪ 급여채권에 대해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월 급여액	압류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없음(전액 압류 금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월 급여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액의 1/2
600만원 초과	월 급여액에서 [300만원 + (월 급여액 × 1/2 300만원) × 1/2]을 뺀 금액

※ 2026. 2. 1.부터 압류금지 생계비·최저금액, 보장성보험금 및 예금 등의 금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조).

채권의 성질 및 약정에 따른 가압류 제한

▪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49조제1항 단서 참조).

▪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가압류의 절차상 제한

선담보제공의 제한

▪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진술최고의 신청 및 절차

▪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및 제291조).

- 가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해당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3항 및 제291조).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서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분 송달료 × 제3채무자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개별 사안에 따른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5.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가압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

▪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집행방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 그 밖의 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를 예정하고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 조합원의 지분: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지분: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23조 및 제269조).

▹ 예탁유가증권: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가압류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

가압류할 권리의 특정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도 가압류할 권리를 특정하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51조제1항 및 제291조 참조).

그 밖의 재산권 유형별 가압류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및 제291조).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및 제291조).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51조 및 제291조).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3.1.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3.1.1. 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가압류 절차에는 소장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신청서의 보정명령

▪ 재판장은 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지 않는 등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제2항).

▪ 재판장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실질적 심사

심리방식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 하는 경우에도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 ※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는 경우
>
> 다음의 경우에는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제288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입증의 정도

▪ 가압류 절차에서 신청이유 등은 증명이 아닌 소명(疏明)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이란?

증명에 비해 낮은 정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일단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소송을 신속하게 행할 필요가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 인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3.2.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3.2.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 각하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신청 기각

▪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및 제277조 참조).

▸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 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참조).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 각하(却下):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기각(棄却):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및 재항고

▪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및 제281조제2항).

▹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 채권자는 항고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2조).

즉시항고장의 인지액·송달료

▪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에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신청비용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 방식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담보액의 산정

▪ 담보로 제공할 금액과 담보를 제공할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 구체적인 담보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의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1항·제3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전산양식 A3140 참조).

현금공탁

▪ 법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지정된 납입 기일 이내에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집행취소 및 공탁금 회수-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 선담보제공을 하려는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3항).

선담보제공 대상 및 보증금액 기준

▪ 목적물별 선담보제공의 대상 및 보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가압류 목적물	선담보제공 가능 여부	보증금액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능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가능	청구금액의 2/5 (법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유체동산,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선담보제공 대상 아님	-

※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립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요율·보험가입금액·납입보험료 등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상품-공탁보증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 명령

가압류 결정서의 송달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 다만,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참조).

▹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92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가압류 명령의 잠정성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공탁되며,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및 제161조제1항).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해방금액의 기재

▪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할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명령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 “가압류해방금액”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도록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집행취소 및 공탁금 회수-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4.1. 집행절차

4.1.1. 가압류의 집행

가압류 집행의 공통사항

가압류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제3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집행의 개시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집행기간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 집행기간은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므로,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은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목적물별 가압류의 집행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제3항).

▪ 부동산을 가압류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및 제291조).

▪ 가압류의 집행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수익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4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의 집행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 및 제211조).

▪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3항, 제210조제2항·제3항 및 제211조).

▪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제117조, 제210조제2항 및 제211조).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296조제1항).

▪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 명령의 표시, 목적물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 명령 정본을 붙여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제1항).

▪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제2항 및 제291조).

▪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으나,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제1항).

금전채권가압류의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목적인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재판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91조 및 제296조제2항·제3항).

제3채무자의 공탁

▪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및 제297조).

▪ 목적물별 집행기관·집행방법 및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51조, 제291조, 제293조, 제29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11조제3항, 제174조, 제175조제3항,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참조).

가압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방법	효력 발생시기
부동산	집행법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	등기부에 기입된 때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집행법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	등록원부에 기입된 때 (등록 전 집행관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
유체동산	집행관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동산 압류의 방법)	집행관이 압류한 때
금전채권	집행법원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 정본 송달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
그 밖의 재산권	집행법원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 등을 준용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

※ 그 밖의 재산권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은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제3항에 따라 효력 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75조제3항).

※ 집행관이 가압류의 집행을 하면서 붙인 봉인, 그 밖에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제1항).

4.2. 집행취소 및 공탁금 회수

4.2.1. 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가압류의 집행해제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참조).

▹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제296조제1항·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참조).

집행해제 신청비용

▪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부동산 또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참조).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원	부동산 1개당 1,200원	부동산 1개당 4,000원
자동차	1건당 15,000원	-	-

가압류의 집행취소

채무자의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제299조제1항).

▹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해방금액을 공탁하려는 채무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공탁금을 납입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집행취소신청비용

▪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 신청비용의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신청비용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의 회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각하에 따른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의 회수

본안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어 담보할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 담보취소신청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 정본·확정증명원 등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붙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제444조제1항,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

본안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본안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도 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 회수

▪ 본안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참조).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공탁금 회수청구서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청구서 작성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5.1. 이의신청

5.1.1.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의 자격

▪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불복방법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참조).

▹ 채무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참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참조). 다만,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 참조).

▪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따라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참조).

▪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관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이의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제5항).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의 이의신청 취하

-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제5항).
-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5.2. 취소신청

5.2.1.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제2항).

제소명령 신청비용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 제소명령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소명령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

▪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

▪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 제기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5.2.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 사유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음)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 ※ “사정변경”이란?
>
> •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되거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참조).
>
>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참조).
>
> •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참조).
>
> √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참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제288조제1항제2호).

※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와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의 차이

-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명령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및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서, 담보의 종류와 액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및 불복

취소신청의 관할 및 신청비용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88조제3항).

▪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288조제3항).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288조제3항).

▪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압류 취소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